

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라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(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☎ 042-481-395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 공고

민법 제38조,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단법인 한국미디어특설산업진흥협회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.

2014년 9월 30일

중소기업청 청장 한정화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
2. 처분 대상 : 사단법인 한국미디어특설산업진흥협회(대표자 이태규)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: 협회 회원의 탈퇴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협회 자진 해산
4. 법적 근거 : 민법 제3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
5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사단법인 한국미디어특설산업진흥협회(대표자 이태규)에 대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
6. 청문일시 : 2014년 10월 8일(목) 14시부터 16시까지
7. 청문장소 :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1107호 소상공인정책과 회의실
8. 청문주제자 : 황수성(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)
9. 기타 유의사항
 - 가. 처분 대상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호 서식(붙임1)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- 나.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 - 다. 처분 당사자 등은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